

의안번호	2213273
의 퇴 인	권칠승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 계 번호	25D5287
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민투표 시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, 2026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추가 재정소요는 953억 9,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재외투표 실시(안 제2조)	12,047	-	-	-	-	12,047
사전투표 실시(안 제38조제2항)	83,346	-	-	-	-	83,346
합계	95,393	-	-	-	-	95,393

주: 1. 재외투표 실시(안 제2조)와 사전투표 실시(안 제38조제2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는 2026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투표인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)	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	의무규정
3	안 제8조(투표권)	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이 있음	의무규정
4	안 제32조(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)	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각각 2명씩 초청하여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	의무규정
5	안 제38조제2항(투표시간)	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음	의무규정
6	안 제40조(투표참관인의 선정 등)	투표참관인 등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함	의무규정
7	제51조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) 신설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O	추가재정소요는 재외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
2	안 제5조(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)	X	국민투표 관련 공정성 위반행위의 범위, 내용 등에 따른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8조(투표권)	—	일반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는 실제 투표율보다 5~10% 많게 이루어져 추가된 18세 선거권자 ¹⁾ 를 위한 투표용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4	안 제32조(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)	—	토론회 개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
5	안 제38조제2항(투표시간)	O	추가재정소요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
6	안 제40조(투표참관인의 선정 등)	—	현행법에서 규정한 투표참관인은 12명이므로 8명을 규정한 개정안에 따라 재정소요 감소 예상 (다만, 사전투표참관인은 추가재정소요이며 이는 안 제37조제2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포함)
4	제126조(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) 신설	X	재외투표관리위원회 구성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존 인력 활용 여부,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1)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결과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19세 이상인 국민투표 선거권자 수는 44,602,590명이고 18세 인구는 456,675명으로 1% 증가하여 투표용지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1987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고 향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, 추계에서는 2026년에 국민투표가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투표 시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- 재외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0억 5,800만원으로 예상
 - 개정안 제61조에서는 재외투표에 관하여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³⁾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재외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예산을 활용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예산으로 118억 2,200만원 편성
 -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기준 120억 5,800만원으로 예상
-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34억 2,800만원으로 예상
 - 개정안 제41조에서는 투표에 관하여 「공직선거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⁴⁾하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0%	1.9%	2.0%	2.0%	2.0%

3) 안 제61조(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)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를 준용한다.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4) 안 제41조(투표절차의 준용규정)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「공직선거법」의 제10장(투표)을 준용한다.

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예산을 활용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예산은 817억 9,200만원 편성
-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기준 834억 2,800만원으로 예상됨

□ 추계결과, 2026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재외투표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953억 9,3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2026년 국민투표 가정 시 추가재정소요 추정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
재외투표 실시	12,047
사전투표 실시	83,346
합계	95,39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2026년에 국민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